
「안산 겨울 빛의 나라 2026」 행사 대행 용역 과업내용서

2026. 9.



안 산 문 화 재 단
Ansan Cultural Foundation

1. 사업개요

가. 과업명 : 「안산 겨울 빛의 나라 2026」 행사 대행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 ~ 2027. 1. 31.(일)

※ 행사장 설치·운영·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기간 포함

다. 행사일자 : 2026. 11. 21.(토) ~ 2027. 1. 17.(일) / 점등식 2026. 11. 22.(일)

라. 행사장소 : 안산문화광장

마. 과업내용 : 빛을 이용한 다양한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 포토존 구성 등

바. 사업예산 : 금224,000,000원(이억이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등 일체 포함

2. 과업목적

가.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맞이하여 시민과 관람객에게 따뜻하고 밝은 축제 분위기를 전달하고 다양한 볼거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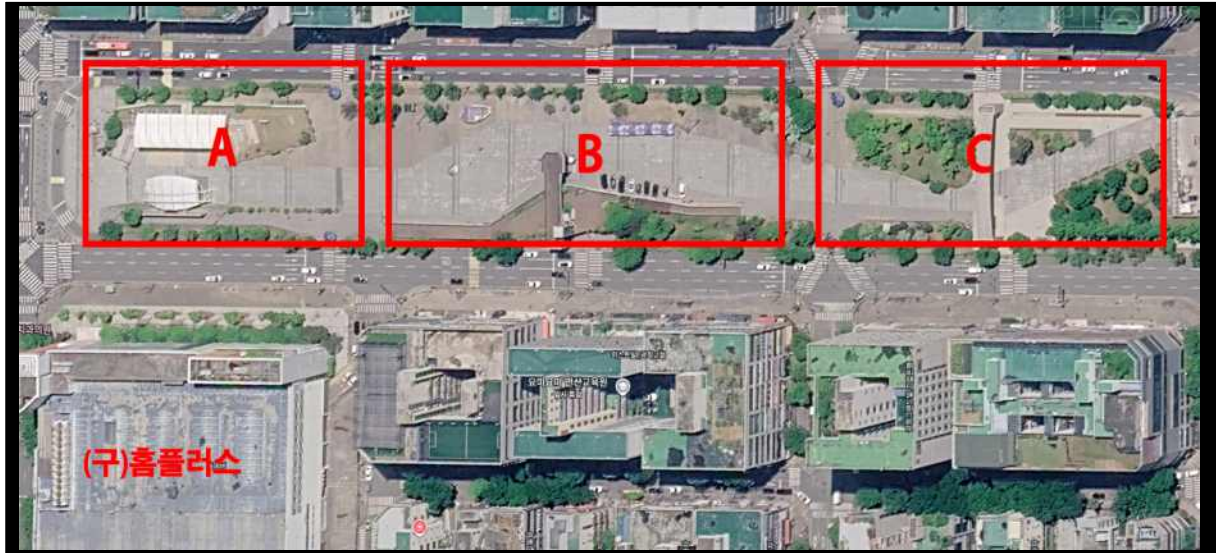
나. 안산문화광장 일대에 차별화되는 디자인과 콘텐츠 활용으로 조명장식과 구간별 조형물을 설치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겨울 야간경관 공간 조성

다.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도시형 축제를 개최하여 겨울철 광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II 과업범위 및 내용

1. 과업추진: 사업장소 ‘안산문화광장’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테마 설정



가. A ZONE

- 스마트공연장 벽면 별빛 조명 연출, 공연장과 객석 가랜드 조명 설치, 미러볼 등 특화조명 연출
- 점등식 연출, 트리 조명

나. B ZONE

- 공간을 활용하여 빛과 조명을 설치하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
- WELCOME 2027 포토존 구성
- 전망대 올라가는 길 조명 구성
- 회전목마 임차 설치 및 운영(1개월) / 30인승 이상(발주기관과 협의 진행)
- 소원 트리 구성, 트리 조명

다. C ZONE

- 레이저 조명과 스모그 머신을 통한 오로라 구현
- 나무, 잔디를 활용한 반딧불이 숲 조성, 트리 조명

라. 기타

- 스마트공연장 객석 등 촛불(LED)을 활용한 공간 구성
- 광장내 숲 반딧불이 조명
- 발광 우산을 통한 포토 물품 구비 운영
- 기타 제안

마. 행사 일정

구 분	일 시	내 용	비 고
안전관리 심의	2026. 11. 20.(금) 예정	현장 안전관리	안전관리 심의
테스트	2026. 11. 21.(토)	사전 테스트	
점등식	2026. 11. 22.(일) 18:00	점등식 진행	점등식 연출
빛축제 운영시간	17:00 ~ 23:00	빛축제 운영	자동타이머 설치 운영
회전목마 운영	매주 금, 토, 일, 크리스마스 ----- 11. 21.(토) ~ 12. 27.(일)	금(15:00~19:00) 토, 일(14:00~18:00) ※크리스마스(14:00~18:00)	운영인력 2명 상시 대기 ※미운영시 포토존 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조명 설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과업범위

구분	과업내용
기획 · 연출 · 운영관리	▶ “안산 겨울 빛의 나라 2026” 경관 조명 설치 및 운영 등 ▶ 빛 설치 기획 및 연출, 디자인 설계, 전시, 관리, 철거 등
점등식	▶ 점등식을 위한 빛 특화 퍼포먼스 기획 및 실행
행사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	▶ 축제장 공간 조성(ex:프로젝션 맵핑, LED, 레이저 등 첨단 조명 기술을 적극 활용) ▶ 관람객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 시설물 · 경관조명 배치 및 전시 ▶ 안전을 위한 시설에 안내판 및 울타리 등 설치 ▶ 테마별 공간 구성 및 시설물의 관리 운영 ▶ 현장 운영인력 수급, 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인력 투입) ※ 시설의 문제 발생시 1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함.
부대 프로그램 기획 운영	▶ 겨울을 주제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친구 · 연인들 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운영 ※ 행사 시간 계획은 주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전기 설비 및 공급	▶ 설치 및 운반 관련 전반적인 안전 작업계획 수립 ▶ 경관조명의 설치, 연출, 안전성 검토 등 ▶ 기타 전기 관련 전반적인 사항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조치계획 수립 - 안전관리조직도, 시설물·구역별 책임자 관리자 지정, 천재지변 및 관람자 안전사고 대책 등 ▶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행 ▶ 시설/물자 관리, 작업자 안전 관련 규정 준수, 현장인력관리 등 현장관리 사항 전반 ▶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영조물 배상 공제 등 각종 필요 보험 가입 ▶ 기상 상황 등 천재지변 대비계획 수립												
보험 및 부대비용	▶ 행사 보험 가입(설치 시작일부부터 ~ 철수일까지) <table><tr><td>구분</td><td>보상한도액</td><td>자기부담금</td></tr><tr><td>대인배상</td><td>인 당 1억5천 사고당 3억</td><td>100,000원</td></tr><tr><td>대물배상</td><td>사고당 2억</td><td>100,000원</td></tr><tr><td>구내치료비</td><td>인 당 1백만원 사고당 5백만원</td><td>-</td></tr></table> ▶ 전기료 납부(행사에 사용되는 전기 산정하여 대납)	구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인배상	인 당 1억5천 사고당 3억	100,000원	대물배상	사고당 2억	100,000원	구내치료비	인 당 1백만원 사고당 5백만원	-
구분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인배상	인 당 1억5천 사고당 3억	100,000원											
대물배상	사고당 2억	100,000원											
구내치료비	인 당 1백만원 사고당 5백만원	-											
기타 운영사항	▶ 인력 운영 및 관리 ▶ 행사 기록(사진 및 영상) 일체 및 결과보고서 작성 ▶ 방문객 만족도 조사·분석, 발전 방안 도출 ▶ 기타 재단이 요구하는 사항												

3. 과업세부내용

가. 기획·연출·관리

1) ‘안산 겨울 빛의 나라 2026’ 경관 조명 기획·연출·운영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

- 행사의 취지와 목적, 행사 장소의 특징을 고려한 전체 컨셉트 및 계획 수립
- 제안 시 행사내용 구성안과 세부적인 배치 계획 수립
- 과업지시서 상의 제안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 운영계획은 재단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과업의 주제 및 스토리 제작에 맞는 각종 디자인, 콘텐츠 제작·구성 및 연출
- 과업지시서 내의 과업 외에도 원활한 행사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모든 업무를 운영사의 과업으로 간주, 세부 내용의 경우 재단과 협의를 통해 추진
- 기타 과업 수행 관련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 등

나. 점등식 진행

- 1) 축제 주제 및 컨셉을 고려한 빛 특화 퍼포먼스 운영

다. 행사장 조성 및 시설물 설치

1) 기본 조성

- 행사장 빛 설치물 관련 시설 디자인 및 제작·보수·임차 계획에 따른 장소 확보 및 설치
- 행사장 및 주변 조명 환경, 자연환경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조명 연출
- 조형물과 어우러지는 음향 시설물 설치(음향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포토존 설치 및 운영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조성
- 테마별 공간 배치 및 시설물의 운영, 유지보수 및 관리, 철거(원상복구)
- 부대프로그램 인력 운영 대기실 운영
 - ※ 안산문화광장 사무실 공유. 단, 집기는 직접 배치하여야 함
- 행사장 내 전시물 및 시설·장비 관련 도난, 화재, 분실, 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 기본 조성시 축제장 기물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파손 및 훼손 시 원상 복구 조치
- 행사종료 후 설치물, 기타 시설물 등을 철거 완료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철수

라. 부대 프로그램 기획 운영

- 1) 겨울을 주제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친구·연인들 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 운영(최소 2개 이상 프로그램 운영)
 - ※ 혹한 대비를 위한 방한 물품 운영(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마. 전기 설비 및 공급

작업 전에 반드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위험 정도를 평가해야 함.
평가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해야 함.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육 참여 현황을 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안전교육에 따른 확인 서류는 완료계 제출시 포함시켜야 함.
이 모든 과정은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용역사 관리자가 책임지고 총괄 관리해야 함.

- 1) 경관조명의 설치, 각종 조형물 운반 시 차량 통행 등 전반적인 안전 작업 계획 수립

- 경관조명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일정 명시 후 제출
- 2) 경관조명 및 조명시설물 등은 야외 환경에서 장기간 견딜 수 있는 견고성과 내구성, 안전성 검토 후 설치(파손 시 재설치)
- 3) 시공·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과 에너지 절감 등을 감안한 점등 제어 방식 적용(점등방식 제안 시)
- 4) 조명의 규모, 배치, 디자인 등의 창작사항과 광원의 종류, 조명기구 구성, 조명의 연출 방법 등과 관련된 시공 및 유지보수, 전기료 산정 등 제시
- 5) 유지 용이 및 관리비용 최소화, 고효율 및 절전형 조명기구 사용 원칙
- 6) 안정적인 전기 공급 및 안전대책 수립(예: 발전차 및 한전예비전력 등)
- 7) 안전관리자(전반적인 관리·감독)는 프로그램 운영 시간 내 행사 장소에 대기
 - 운영 시간은 재단의 승인하에 변경 가능
- 8) 적정 전기용량 설치 및 철거 계획
- 9) 전기설비 설치 후 안전진단 필수
- 10) 전력 비상 상황을 대비한 예비 발전기 준비(필요시)
- 11) 경관조명에 공급하는 전원 배선은 우수, 침수, 누전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반영 설치
- 12) 파손 또는 신체적 접촉 시 위험이 없도록 안전대책 강구

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조치계획 수립(행사 21일전)
 - **관련법규(중대재해법 포함)** 준수하여 안전 관리 및 위기상황 대처 계획 수립 및 제출 (안전사고, 우천, 화재 등)
 - 대행사는 총괄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총괄안전관리자 안내 현수막 3개를 행사장 주변에 설치하여야 함
 - 행사 전 참여 인력 전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진행
 - ※ 안전대책 미흡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운영사 책임
 - 비상 상황 대처를 위한 물품 및 인력 적정 배치
 - 행사 진행 일체에 대한 보험 가입 및 관리
 - (사전행사, 대인대물, 구내치료비 가입필수, 자기부담금 운영사 부담)
 - 기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 및 현장 운영
 - 참여인력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한 안전 물품(안전벨트봉, 전선 덮개 등) 운영

사. 기 타

- 총괄 담당자 및 안전관리자는 정규직 직원으로 팀장급 이상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단, 총괄 담당자의 부재시 이를 대신할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함.
 - 각 과업 분야별 담당자 지정 및 해당 분야 경력 제시
 - 현장 인력 운영방안 제시
- 현장 운영 인력 확보 및 관리
 - 회전목마 운영 인력 2명
 - 모든 현장 안내 인력 사전 교육 필수 (프로그램 숙지, 서비스 교육 등)
- 기타 과업수행 관련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 등

※ 제안서와 종합실행계획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 하도록 작성

1. 과업의 수행방법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제안사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를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는 착수계 제출후 재단과 협의하여 실시
 - ※ 수행계획서의 제출 일정은 재단과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 계획서는 일정표(상세 업무추진 일정계획표), 참여인력 명단 등을 기재
 - 과업수행 방법, 운영 인원 구성 및 인력투입 계획 등 기재
- 과업 완료시, 과업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사진이 들어간 검수 조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의 시행

- 제안사는 재단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재단의 추진 방향에 따라 과업을 진행하고, 부대 프로그램 및 현장 운영 진행 분야에 최선을 다해야 함
 - ※ 사업추진은 재단의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투입 인력은 제안사의 정규인력이거나 재단의 승인을 받은 협력업체 직원이어야 하며 사전보고 된 투입 인력과 내용 변경 시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부대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은 기간제근로자도 가능함.
- 투입된 정규인력에 대해서는 상세 경력 및 참여 과업이 기록된 자료를 최초 협상 시 제출하여야 함
 - ※ 용역수행 참여 인력은 반드시 제안사의 직원이어야 하고, **4개월 이상** 제안사에 근무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협상 첫 날 제출함. 또한 당해 과업수행에 참여 하여야 함. (구비서류: 재직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단, 부대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 가능.
- 제안사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투입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가 투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해당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

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투입 할 수 없음

- ☐ 제안사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투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함
- ☐ 제안사는 재단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과업을 변경, 축소, 누락할 수 없음.

3. 사업비 지급

- ☐ 재단은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운영사의 청구에 의하여 규정에 따라 선금금 지급할 수 있음. 잔여 사업비는 사업의 진행 결과에 따라 사업 완료에 따른 완료계 제출에 따라 잔액을 지급 함
- ☐ 재단은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의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음.

4. 계약이행의 보증 등

- ☐ 계약이행의 보증 등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재)안산문화재단’ 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 (계약)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재단에 증권 제출

5. 안전보건 관리방안 마련 등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령에 명시된 조치사항을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01.27.) 관련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위험성평가표 제출
 - 경관조명 및 부대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안전(소화기, 구급키트)물품을 비치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안전 교육 이수자가 완료된 자에 한함.
- ☐ 우천, 화재 등 재난방지 대책(장비지원)을 수립하여 안전하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함.
- ☐ 계약사항에 명기되어있지 않더라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함
- ☐ 제안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축관계법, 소방법, 건설산업 및 본법 기타 관련법과 각종기준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공사에 관

한 면허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를 통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 모든 참여 인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하여 제안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향후 안전교육 실시 확인증 제출 단,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 행사를 위해 제안사에서 투입하는 **인력 및 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6. 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

-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 제안사는 재단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7. 약정의 해지

- ☐ 재단 또는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해제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함
- ☐ 재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② 계약상대자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 ③ 계약상대자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재단은 위 ①항 및 ②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 ☐ 위 ①항 및 ②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재단에 청구할 수 없음

8. 손해배상

- ☐ 재단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함
- 재단 감독관이 판단하여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재단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다만, 제안사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단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 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재단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9. 기 타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재단에 적극 협력해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제안사가 제안한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재단이 제안사에 추가로 지시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제안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재단에 납부하여야 함
- 제안사와 재단 간에 본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사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 할 수 없음

IV 과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1. 과업보고

가.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하여 재단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 수행자는 조건없이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정기보고

1) 주간보고: 부대 프로그램 운영 보고 및 문제점 등 보고

다. 단계별 보고

1) 착수 보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완료 보고: 과업종료 시 전체 개발단계의 수행 결과 및 산출물 내역 보고

라. 수시 및 기타보고

1) 변경 보고: 업무의 수행 방법 및 이에 따른 산출물의 변경 시 변경 보고

2) 위험관리 보고: 잠재적 위험 요소 발견 시 위험 요소에 대한 조치 방안 논의 및 처리 후 보고

3) 기타 보고: 재단에서 요청 시, 서면 및 대면 보고해야 함

2. 완료계 제출

가. 제출기간: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

나. 완료보고서: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2부(정산보고 포함)(출력물 및 파일)

- 경관 조명 운영 및 부대 프로그램 운영 내용(사진포함) 기재
- 고객 설문조사 내용 포함.